

효성화학(주)  
**제보하기프로세스**

Last update : 2022.05.23

## 목차

목적-----	03
적용범위-----	03
제보내용-----	03~04
제보절차-----	04
제보자보호원칙-----	05

## 1. 목적

- 1) **효성화학**은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보 채널의 운영을 통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부정한 침해를 근절하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하고자 함.
- 2) 본프로세스의 목적은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관행 (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내규정위반, 잠재적인사기, 부패 또는 심각한 불법행위 및 부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목격한 회사직원이 상급자에게 알리지않고 신원 공개없이 "제보하기"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단, 내부 제보자의 신원이 제공된 경우에 내부 제보자는 **효성화학**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 인권 방침 및 원칙에 기반하여 해당 신원을 철저히 보호함.
- 3) 이 프로세스는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조사(**효성화학** 감사 규정)에 적용됨.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시점과 관련 법률 및 당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4) 본 프로세스에 따른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조사과정에서 감사 규정 또는 개인정보보호운영 기준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됨.

## 2. 적용범위

- 1) **효성화학(주)**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등 직원은 아니지만 회사를 대신하는 회사나 사람 (예.하도급업체)에게 적용

## 3. 제보내용

- 1) 아래 내용을 포함, 임직원의 규정위반행위, 금지행위, 불법행위 등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
  - 1)-1. 윤리강령 및 법규위반
  - 1)-2. 반부패 및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
  - 1)-3. 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위반
  - 1)-4. 직장내 괴롭힘

- 1)-5. 임직원고충사항
- 1)-6. 아동/강제 노동 및 인권침해
- 1)-7.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결여
- 1)-8. 협력사 고충사항
- 1)-9.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 1)-10.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부정적 보고
- 1)-11. 정보보안침해
- 1)-12.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사항

#### 4. 제보절차

1) 제보자는 아래 언급된 방법을 통해할 수 있음.

1)-1. [효성화학](http://www.hyosungchemical.com/kr/others/report_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음.

[http://www.hyosungchemical.com/kr/others/report\\_index.do](http://www.hyosungchemical.com/kr/others/report_index.do)

1)-2. E-mail 을 통해 제보할 수 있음.

[C-audit@hyosung.com](mailto:C-audit@hyosung.com)

2) 제보시 담당자의 이메일로 등록 안내메일이 발송되고, 동시에 제보등록완료 메일이 제보자에게 발송됨.

3) 심사 필요성을 판단 후, 필요성이 없을 경우 근거를 조치 내역에 등록하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등록함.

4) 제보 담당부서에서 직접 제보내용을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하고, 비리 확인 및 점검함. 단, 심사 과정 중 피험자는 조사, 증거를 보류, 파괴 또는 변조해서는 안되며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도하거나 협박하지 않음. 그러한 행위는 징계 절차의 책임이 있음.

5) 심사 책임자는 보호 공개를 받은 후 증거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보담당부서에 제출, 보고, 배포함.

6) 배포 후 개선 대책서 및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었거나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 후 종결 처리함.

7)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발송함. 익명제보자의 경우, 제보 센터내 '익명제보확인하기'를 통해서 조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5. 제보자보호원칙

- 1) **효성화학은** 윤리강령, 윤리강령실천지침, 인권 방침 및 원칙에 기반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
- 2)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함.
- 3) 제보자 본인의 동의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함.
- 4)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의진술, 자료제공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지원함.
- 5)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보자 및 관련자는 해당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
- 6) 위법 및 비윤리행위에 가담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 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음.
- 7) (추가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데이터 최소화원칙을 적용해야 함.  
징계위원회는 특정 경우에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개인정보만(추가로) 처리해야 함.
- 8) 징계위원회는 각 사례의 결과는 내부 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존기간이 준수 되도록 할 것 임.
- 9) 징계위원회는 접근 권한 요구에 응할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10) 개인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폐기 전 까지 기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규정에 따라 복구 불가능 하도록 폐기됨.